

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

제정	1971. 2. 20	조례 제 242호
개정	1996. 3. 1	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1997. 10. 1	조례 제 97호
	1999. 1. 14	조례 제 160호
	1999. 4. 3	조례 제 212호
	2004. 12. 31	조례 제 549호
	2005. 10. 5	조례 제 769호
	2006. 12. 29	조례 제 844호
전부개정	2009. 4. 24	조례 제1023호
일부개정	2011. 12. 15	조례 제1205호
일부개정	2013. 12. 11	조례 제1344호
일부개정	2015. 7. 6	조례 제1472호
일부개정	2016. 12. 12	조례 제1640호
일부개정	2017. 12. 11	조례 제1756호
일부개정	2023. 7. 31	조례 제2425호(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)
일부개정	2023. 12. 8	조례 제2469호
일부개정	2024. 10. 30	조례 제256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등의 진료비,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7. 6, 2016. 12. 12>

[전문개정 2013. 12. 11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 7. 6>

1. “진료비”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.
2. “수수료”란 검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3. 12. 11]

제3조 삭제 <2013. 12. 11>

제4조 삭제 <2013. 12. 11>

제5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

이용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(이하 “진료비 등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6. 12. 12>

② 삭제 <2016. 12. 12>

[제목개정 2013. 12. 11]

제5조의2(진료비 등) ① 진료비 등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 기준액으로 징수한다. <개정 2016. 12. 12, 2023. 12. 8>

②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(약가를 포함한다), 소모품비,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별표 3에 따른 항목은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. <개정 2015. 7. 6, 2016. 12. 12, 2017. 12. 11>

③ 삭제 <2017. 12. 11>

[본조신설 2013. 12. 11]

[제목개정 2023. 12. 8]

제6조 삭제 <2013. 12. 11>

제7조(건강검진 검사수수료)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 검사 수수료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한다. 다만, 콜밀도 검사 항목은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. <개정 2016. 12. 12, 단서신설 2023. 12. 8>

[전문개정 2013. 12. 11]

[제목개정 2016. 12. 12]

제8조 삭제 <2011. 12. 15>

제9조 삭제 <2011. 12. 15>

제10조 삭제 <2011. 12. 15>

제11조 삭제 <2013. 12. 11>

제12조(증명발급 수수료)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. <개정

2017. 12. 11〉

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(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)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. 〈개정 2013. 12. 11, 2016. 12. 12〉

제13조(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)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. 〈개정 2011. 12. 15, 2015. 7. 6, 2016. 12. 12, 2017. 12. 11〉

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〈개정 2011. 12. 15, 2013. 12. 11, 2016. 12. 12〉

③ 삭제 〈2013. 12. 11〉

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하여 원외 약국 혈압약과 당뇨약의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〈신설 2013. 12. 11, 개정 2015. 7. 6, 2016. 12. 12, 2023. 7. 31, 2023. 12. 8〉

⑤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3. 12. 11, 개정 2016. 12. 12, 2017. 12. 11〉

[제목개정 2016. 12. 12]

제14조(진료비 등 납부 및 징수방법) ① 이 조례에 따른 진료비 등은 그날 또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. 12. 11, 2015. 7. 6, 2016. 12. 12〉

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은 현금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. 다만, 제12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. 12. 11, 2015. 7. 6〉

③ 삭제 〈2013. 12. 11〉

④ 시장은 진료 또는 검사, 각종 증명발급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. 12. 11〉

제15조(면제 취소 및 징수) 시장은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 받은 사람

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12, 2017. 12. 11>

[전문개정 2013. 12. 11]

[제목개정 2017. 12. 11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12. 15 조례 제120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12. 11 조례 제1344호>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7. 6 조례 제147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2. 12 조례 제164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2. 11 조례 제175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7. 31 조례 제2425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
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2. 8 조례 제246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10. 30 조례 제2564호>

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4. 10. 30>

각종 증명발급 수수료(제12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수수료	비 고
1. 건강진단서	1통당	2,000	
2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	1통당	3,000	*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
3. 건강진단결과서	1통당	3,000	* 「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
4. 그 밖의 증명서 발급	1통당	500	
5. 발급증명서 재발급 및 추가 발급	1통당	500	
6. 의료기록(방사선 의료영상) 사본(CD) 발급	1개당	3,000	
7. 발급증명서 온라인 추가 발급 (공공보건포털)		무료	

[별표 2] 삭제 <2011. 12. 15>

[별표 3] <개정 2023. 12. 8>

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액표
(제5조의2제2항 관련)

구 분	기 준 액
유료예방접종	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. 단, 10의 자리 금액에서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,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.
치과 비급여 진료	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.

[별표 4] <개정 2023. 7. 31>

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기준 (제13조 관련)

구 분	면제 범위
1.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	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면제
2. 방문보건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이동진료를 할 경우	진료비면제
3.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의 경우	진료비면제
4.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의 경우(용인시 인근 관할구역 외 지역 포함)	진료비면제
5. 용인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소를 둔 시민과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체류자를 둔 외국인 중 65세 이상자가 진료하는 경우(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한정함)	진료비면제
6.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(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에 한정함)	진료비면제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
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
다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
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	
마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	
바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	진료비면제
사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
아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
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의 경우(응급처치 및 응급투약에 한정함)	
8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	
9. 관계법령 또는 용인시 다른 조례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	진료비 또는 검사수수료 면제
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	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면제

[별지 제1호서식] 삭제 <2011. 12. 15>

[별지 제2호서식] 삭제 <2011. 12. 15>

[별지 제3호서식] 삭제 <2011. 12. 15>